

종합사회복지관 운영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, 운영비, 무료사업비 등 지원		
사업비 (당해년도)	91,036,937천원	(국비)	(사비)91,036,937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정책실	지역돌봄복지과	박동석 2133-7370	김민주 2133-7387	고소영 2133-7338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8예산액 (A)	2019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-) 89,098,774	(x-) 91,036,937	(x-) 1,938,163	(x-) 2
시책추진업무추진비	(x-) 33,200	(x-) 33,200	(x-) 0	(x-) 0
민간경상사업보조	(x-) 40,000	(x-) 40,000	(x-) 0	(x-) 0
민간위탁금	(x-) 1,100,880	(x-) 1,120,600	(x-) 19,720	(x-) 1
자치단체경상보조금	(x-) 87,924,694	(x-) 89,843,137	(x-) 1,918,443	(x-) 2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	
시책추진업무추진비	○ 사회복지 주요업무추진 33,200,000원	= 33,200천원
민간경상사업보조	○ 종사자 교육비 40,000,000원	= 40,000천원
민간위탁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복지관 기본인건비 45,182,000원*19명 ○ 사회복지관 운영비 125,000,000원 ○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360,000원*5명 ○ 복지포인트 4,460,000원 ○ 기능특화운영비 40,000,000원 ○ 이동목욕사업 75,882,000원 ○ 시설개방지원 15,000,00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= 858,458천원 = 125,000천원 = 1,800천원 = 4,460천원 = 40,000천원 = 75,882천원 = 15,000천원
자치단체경상보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복지관 기본인건비 - 임대아파트내 사회복지관(30개소) 25,753,740,000원 - 구립, 법인직영 사회복지관(65개소) 50,220,040,000원 ○ 사회복지관 운영비 - 임대아파트 내(30개소) 3,200,904,000원 - 구립, 법인직영(65개소) 6,269,400,000원 ○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360,000원*3명*95개소 ○ 종사자 복지포인트 423,700,000원 ○ 사회복지관 특별지원금(중립, 유락) 120,000,000원 ○ 상담소(2개소) 186,995,000원 ○ 기능특화운영비 40,000,000원*24개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= 75,973,780천원 = 25,753,740천원 = 50,220,040천원 = 9,470,304천원 = 3,200,904천원 = 6,269,400천원 = 102,600천원 = 423,700천원 = 120,000천원 = 186,995천원 = 960,000천원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	
	○ 이동목욕사업 75,882,000원*19개소	= 1,441,758천원
	○ 시설개방지원 12,000,000원*97개소	= 1,164,000천원

3 사업설명

□ 사업목적

-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,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
-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

□ 사업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(보조금 등) 및 51조(지도 감독 등)
-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□ 사업내용

- 지원대상
 - 종합사회복지관 : 98개소
 - 지원인력 : 총 1,824명 (개소당 평균 19명)
 - 이용인원 : 연평균 17,616,517명(개소당 연평균 179,760명)
- 사업기간 : 2019. 1 ~ 12월
- 보조율
 - 시립 및 영구임대(SH, LH) : 시비 100%
 - 구립 및 법인 : 시비 90%, 구비 10% (사회복지관 기본인건비 및 운영비에 한하며, 기타 보조금은 전액 시비)
- '19년도 소요예산 : 91,036,937천원
- 사업내용
 - 1. 시책추진업무추진비 : 33,200천원
 - 2. 민간경상사업보조 : 40,000천원
 - 사업내용 :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
 - 지원대상 :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
 - 산출단가 : (25,000원*1,200명) + (50,000원*200명)
 - 3. 민간위탁금 : 1,120,600천원(시립복지관 1개소, 전액시비)
 - 3-1. 종사자 기본인건비

- 대상 : 시립복지관(1개소) 종사자 19명
- 내용 : 기본급, 제수당, 4대보험, 퇴직적립금 등
- 단가 : 4급8호봉(평균호봉) 45,182천원
- 기준 : 19명(사회복지사 등 18명, 안전관리인 1명)
- 소요예산 : 858,458천원
- 3-2. 사회복지관 운영비
 - 내용 : 직·간접 운영비, 시설장비유지비, 무료사업비 등
 - 기준 : 시설 면적별 5단계 차등지원
 - 소요예산 : 125,000천원
- 3-3. 비정규직 처우개선비
 - 대상 : 복지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종사자
 - 기준 : 1인 월 30천원, 5명
 - 소요예산 : 1,800천원
- 3-4.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
 - 대상 : 시립복지관(1개소) 종사자 19명
 - 단가 : 10호봉 미만 200천원, 10호봉 이상 260천원
 - 소요예산 : 4,460천원
- 3-5. 기능특화운영비
 - 내용 : 노인·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을 60% 이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기능특화 운영비 지원
 - 소요예산 : 40,000천원
- 3-6. 이동목욕사업비
 - 운영인력 : 2명(1인당 지원단가 37,941천원)
 - 소요예산 : 75,882천원
- 3-7. 시설개방지원
 - 내용 : 주말, 휴일 개방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근무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
 - 소요예산 : 15,000천원
- 4. 자치단체 경상보조금
- 4-1. 종사자 기본인건비
 - 대상 : 사회복지관(95개소) 종사자 총1,805명
 - 내용 : 기본급, 제수당, 4대보험, 퇴직적립금 등
 - 단가 : 4급8호봉(평균호봉) 45,182천원
 - 기준 : 개소당 19명(사회복지사 등 18명, 안전관리인 1명)
 - 소요예산 : 75,973,780천원
- 4-2. 사회복지관 운영비
 - 대상 : 종합사회복지관(95개소)

- 내용 : 직·간접 운영비, 시설장비유지비, 무료사업비 등
- 기준 : 시설 면적별 5단계 차등지원(단계별 7백만원, 95백만원 ~ 123백만원)
- 소요예산 : 9,470,304천원
- 4-3. 비정규직 처우개선비
 - 대상 : 종합사회복지관(95개소)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종사자
 - 기준 : 1인 월 30천원, 시설별 3명
 - 소요예산 : 102,600천원
- 4-4.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
 - 대상 : 종합사회복지관(95개소) 종사자 총 1,805명
 - 단가 : 10호봉 미만 200천원, 10호봉 이상 260천원
 - 기준 : 19명(사회복지사 등 18명, 안전관리인 1명)
 - 소요예산 : 423,700천원
- 4-5. 사회복지관 특별지원
 - 대상 : 2개소(중구 유락, 중림)
 - 내용 : 보조금 미지원되는 2개 사회복지관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
 - 소요예산 : 120,000천원
- 4-6. 상담소
 - 대상 : 2개소(생명의전화상담소, 사랑의전화상담소)
 - 내용 : 위기에 처한 시민대상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통해 삶의 희망 부여(전화, 사이버, 자살위기 개입 등)
 - 운영인력 : 총 5명(생명의전화상담소 3, 사랑의 전화상담소 2)
 - 소요예산 : 186,995천원
- 4-7. 기능특화운영비
 - 대상 : 기능특화복지관 24개소(노인특화 22, 장애인특화 2) ('00년~)
 - 내용 : 노인·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을 60% 이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기능특화 운영비 지원
 - 소요예산 : 960,000천원
- 4-8. 이동목욕사업비
 - 대상 : 이동목욕사업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19개소('97년~)
 - 운영인력 : 복지관별 2명(1인당 지원단가 37,941천원)
 - 소요예산 : 1,441,758천원
- 4-9. 시설 개방 지원
 - 대상 : 평일 야간 및 토·일요일 주민 대상 시설 개방 종합사회복지관 97개소

- 내용 : 근무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(개소당 10,000천원 ~ 15,000천원)
- 소요예산 : 1,640,000천원

□ 추진경위

- '16년 ~ '17년: 보건복지부 최소인력배치기준 권고안('15.6.12),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인력배치기준 및 운영지원 개선(안)
 - 인건비 : 기본인력제 및 정년제 시행 (안전관리인 1명 포함)
 - 직급별, 직능별 인력기준 마련 및 기본인력 17명 지원 → '17.9월부터 19명 지원
 - 안전관리인 호봉제 실시
 - 정년제 의무 이행 (종사자 60세, 시설장 65세)
 - 운영비 : 시설 면적별 5단계 차등 지급 (등급간 7백만원, 95백만원 ~ 123백만원)

□ 2019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91,036,937	
기본계획 수립	2019.01~2019.01	0	
보조금 신청 및 집행	2019.01~2019.12	91,036,937	분기별 신청 및 교부
보조금 집행 정산	2019.11~2020.01	0	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6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: 94개소 ○ 복지관 특별지원금 지원 : 4개소 ○ 이동목욕사업지원 : 20개소 ○ 상담소 지원 : 2개소 ○ 기능특화 운영비 지원 : 26개소 ○ 기능전환특화(마을지향복지관) : 29개소 ○ 사회복지시설개방사업비 지원 : 52개소
--------	---

2017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: 94개소 ○ 복지관 특별지원금 지원 : 5개소 ○ 이동목욕사업지원 : 20개소 ○ 상담소 지원 : 2개소 ○ 기능특화 운영비 지원 : 25개소 ○ 기능전환특화(마을지향복지관) 지원 : 13개소 ○ 사회복지시설개방사업비 지원 : 77개소
2018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: 96개소 ○ 복지관 특별지원금 지원 : 2개소 ○ 이동목욕사업지원 : 20개소 ○ 상담소 지원 : 2개소 ○ 기능특화 운영비 지원 : 25개소 ○ 기능전환특화(마을지향복지관) 지원 : 8개소 ○ 사회복지시설개방사업비 지원 : 84개소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시민 복지서비스의 연속성 확보
- 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을 통한 복지관 만족도 증대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5	(x-) 69,603,648	(x-) 0	(x-) -300,000	(x-) 69,303,648	(x-) 68,293,151	(x-) 0	(x-) 1,010,497
2016	(x-) 73,874,030	(x-) 0	(x-) 0	(x-) 73,874,030	(x-) 73,754,254	(x-) 0	(x-) 119,776
2017	(x-) 80,722,366	(x-) 0	(x-) 0	(x-) 80,722,366	(x-) 80,193,364	(x-) 0	(x-) 529,002